의 안 번호 880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2. 02.08 (수)
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2. 02. 13(월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2. 02. 16(목)

2. 개정이유

○ 2011. 7. 29. 「공직자윤리법」개정으로 인한 위원회의 기능, 운영 등의 관련 개선사항을 반영하고, 기타 미비한 점을 보완 하기 위해 개정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위원의 해촉 근거 신설(안 제2조의2)
- 나. 준용 규정 신설(안 제11조)
- 다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정비
- 4. 관련법령: 「공직자 윤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5. 검토의견

O 조례개정 필요성

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조항을 개정하고,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항을 정비하는 것임

○ 주요내용

- 위원의 해촉 사항과 본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은 법 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음
- 이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항을 정비하는 것임

O 결 론

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에 규정된 조항을 개정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,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됨